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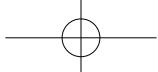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스포츠인권센터

<https://sports-in.sports.or.kr>
02-4181-119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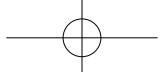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선수용





가이던스 활용 안내사항

- 본 가이던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2007.02.08. 채택)' 및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헌장(2010.12.06.)'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습니다.
- 본 가이던스에 사용된 정의와 예시, 각각의 사례와 관련 법률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 및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본 선수용 가이던스의 적정 교육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교사, 지도자,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I 폭력

1. 폭력의 정의	06
01 스포츠 폭력이란?	06
02 폭력의 구성 요소	06
03 폭력의 유형	07
04 폭력의 사례	08
2. 예방법	11
01 스포츠 폭력의 원인	11
02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지침	11
• 경기장 및 훈련장	
• 합숙 및 일상생활	

3. 대처법	13
01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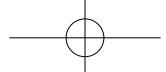
II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18
01 스포츠 성폭력이란?	18
02 성폭력의 유형	19
03 성폭력의 사례	20
04 성희롱의 오해와 진실	23
2. 예방법	24
01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24
02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24
• 경기장 및 훈련장	
• 합숙 및 일상생활	

3. 대처법	26
01 성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26
02 2차 피해	29
• 2차 피해의 양상	
•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III 부록

1. 스포츠인권센터 소개	32
2. 유관기관	33
3. 성폭력의 유형별 관련 법률 정보	36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스포츠인권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스포츠인권 현장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실현이며 자기 표현의 활동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육체능력을 배양하며
자신감과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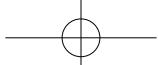
제4장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5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6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7장 스포츠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8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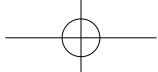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선수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폭력

I





폭력의 정의



PART 01

폭력이란?

권력(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01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02 폭력의 구성 요소

장난인데
뭐 어때?
안돼!
폭력이야!

훈련을 마친 A선수는 운동부 복도에서 **A 한 학년 선배인 B선수를 마주쳤다.** 오늘도 B선수는 A선수의 **C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며 밀어붙이듯** 지나친다. A선수가 아파하며 불편해하자 B선수는 “야, 장난이야 장난~!” 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린다. A선수는 **B 한 두 번도 아니고,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오는** B선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



A 힘의 불균형

관계 안에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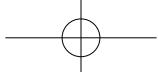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B 반복성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함



C 행위성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행해지는 모든 폭력



03 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ex | 운동 중에 반복적으로 부딪히자 훈련이 끝난 후 학교에서 얼굴과 복부를 때림

방관자 입장의 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기 혹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눈 감아주기, 도움 요청 거절하기, 묵인하기 등

ex | 동료 선수에게 과도한 기합(얼차려)을 받고 있는 후배 선수를 보고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침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ex | 다른 선수와 비교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훈련장에 다니는 들어올 필요 없다며 소리를 지름

② 관계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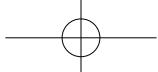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온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ex | 단체 채팅방에 수십 번 초대하면서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운동실력을 비웃고 욕함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심부름 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시간 통제하기 등)

ex | 선배라는 권력을 사용하여 후배에게 체육관 청소를 물어줌



04 폭력의 사례

스포츠 폭력 사례 1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습

A운동부의 체육관은 여러 학년이 함께 사용하지만, A운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신입 부원들이 모든 체육관의 청소와 운동 장비 정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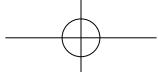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신입 부원들은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을 신입들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학생 선수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는 이유로 신입부원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신입 부원 길들이기라는 명분으로 작정하고 체육관을 더럽히기도 한다. 심지어 불공정함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신입 부원은 ‘너는 우리 운동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거나 괴롭히기 때문에 신입 부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재학생들은 억울하면 1년만 참으라며 암묵적인 관습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스포츠 폭력 사례 2

폭력의 방조 또는 방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실적을 낸 A선수와 동기인 B선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선배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채팅방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이유로 A, B선수와 같은 기수의 선수들이 모두 초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거친 욕설과 협박이 마구잡이로 올라오자, B선수는 감당하기 힘들어 채팅방을 나가보지만 계속해서 다시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결국, 고참 선배 한 명이 말로는 안되겠다며 다른 선배들을 시켜 A, B선수와 동기들을 운동부실로 집합시켰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선수는 감독님께 말씀을 드릴까 잠시 고민하였으나, 동기들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 나 혼자 뛰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다. 고참 선배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한 다른 선배들은 채팅방에서의 괴씸죄까지 더하여 B선수에게 혹독한 기합(얼차려)을 실시하였고, 결국 B선수는 탈진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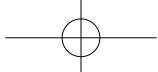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방관한 학생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 폭행 당시 옆에서 피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률명	내용
학교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 2항의 죄(제283조 협박, 존속협박)을 범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언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조, 방관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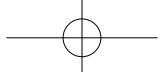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⁴⁾: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자세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대한체육회_관련규정”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법



PART 02

01 스포츠 폭력의 원인

폭력의 재생산

- 지도자, 선수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대물림 됨
- 무의식적, 의식적 폭력의 악순환

묵인

-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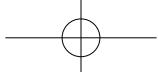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정당화

-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집단 응집력 강화의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 됨
- 지도자, 동료, 선후배 사이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의해 정당화 됨

02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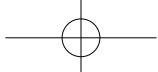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① 경기력 향상 또는 팀의 단합을 이유로 기합이나 가혹행위(구타와 욕설)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②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물건 집어 던지기 및 파손, 자해 등 다른 선수에게 위협과 공포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경기 및 훈련 준비와 정리는 선수 각자가 역할을 부여 받아 동등하게 수행한다.
- ④ 선수 개인의 가방과 훈련 장비는 스스로 관리하고, 다른 선수에게 들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 ⑤ 선수 개인 소지품(스마트폰, 고가의 이어폰 등 IT기기, 브랜드 옷&신발 등)과 개인 훈련 장비는 서로 간에 빌리지 않는다.



- ⑥ 팀 내 친목도모, 환영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선수의 운동복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운동복/운동화 찢거나 낙서하기, 락커룸에 오물 묻히기 등)
- ⑦ 경기 및 훈련 중 상대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심한 욕설, 외모 비하, 가족 혐담, 가정형편 놀리기, 상대 선수의 이전 경기 실수 들추기 등)
- ⑧ 공식적인 훈련시간 외에는 다른 선수의 사적인 시간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는다. (귀가시간 늦추기, 자유시간에 개인 훈련 보조하기 등)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합숙 기간 동안 사용하는 숙소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한 선수 본인 스스로 정비하고 다인실인 경우 선후배에 관계없이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정비한다.
- ② 합숙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개인의 할 일(세탁, 기호품 구입, 학교 과제 등)은 선수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선수에게 시키거나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선수에게 음주와 흡연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 ④ 팀 내 친목도모나 단합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휴식시간을 강제로 조정하거나 휴식시간 중 다른 선수에게 노래와 춤과 같은 장기자랑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⑤ 지도자의 허락 없이 합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다른 선수를 협박이나 위협하여 함께 무단으로 이탈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⑥ 합숙 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을 쉬고 있는 선수를 비난하지 않는다.
- ⑦ 평소 특정 선수의 외모와 말투, 행동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문화 선수의 외모 지적, 체격이 왜소하거나 비대한 선수에 대한 별명 지어 부르기 등)
- ⑧ 소액이라도 선수끼리 또는 지도자와 절대 금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교통카드,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충전하거나 빌려주는 등)



대처법



PART 03

01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01 사건 발생

- 안전확보 사건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응급대응 증거확보와 신체적 안전을 위해 외상 진료 및 증거 사진확보 등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황 파악하기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 벌어 졌으며, 어떠한 사건을 당하였는지 상황을 파악합니다.

02 사건 신고

- 상황 신고하기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수사기관 (경찰)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경찰청 112
-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수사기관 (경찰)
학교·학부모 /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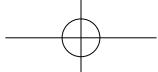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위 관련 기관중 1곳 이상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피해 수준을 전달해야 합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사건에 대해 동료, 지도자, 부모님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는 왜 할까요?

신고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 보호(병원치료, 가해자와의 분리)와 피해 상황 조사 진행이 시작 됩니다.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므로 2차 피해 걱정을 덜어 두셔도 됩니다.



03 초기 대응 및 긴급조치

증거 확보하기

사건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을 조사, 진행하는 분들에게 협조 합니다. (시간, 장소, 목격자, 폭력방법 등)

사건으로 인한 외상 흔적, 사고 장소의 CCTV,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과정에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하기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선수생활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입 (상담, 휴식 등)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는 왜 중요한가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상황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해 차분히 피해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인이나 상담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증거 확보하기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사건담당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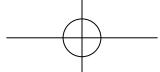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주체

성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사법기관(경찰)

학생 : 스포츠공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법기관(경찰)



05 사후관리

● **사후관리** 온전한 스포츠인으로써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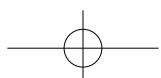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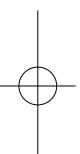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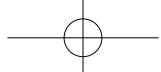
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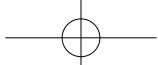
(자존감 하락, 불안, 우울, 공포 등)

몸의 회복만큼 마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의료기관 및 상담센터(스포츠인권센터 내 상담 서비스 등)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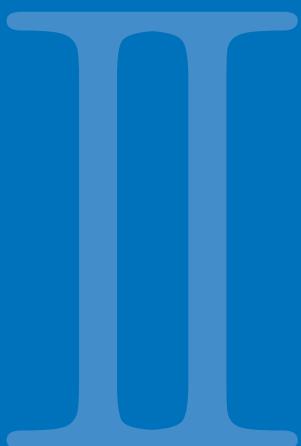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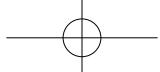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선수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PART 01

01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 스포츠에서의 '**관습적인 성차별적 문화**'로 침해 받는, 운동선수의 성적 자기결정권.

미녀 스타?
국민 남동생?
우리는
운동선수입
니다!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스포츠 종목

“미녀 궁사, 미녀 새, 처녀
출전, 국가대표 최고 동안”

남성 선수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여성 선수의 운동실력

“여자 펠프스, 여자 볼트,
여자 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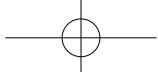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선수 본인의 정체성보다 가부장적 역할 강조

“대표팀 맏딸&살림꾼,
엄마의 투혼, 아내의 승리”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 동의는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나뉩니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 | 너 그때 뭔가 숨겼잖아. 그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텐데? 내가 원하는대로 할거지?
- 선배나 지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ex | 너 이번에 경기에 출전 후보지? 출전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집에 잠깐 들리지 않을래?
- 협박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얻어낸 동의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닙니다.



02 성폭력의 유형

신체적 성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 학대 행위를 하는 것

①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로 넣는 것

ex | 특정 선수의 약점을 트집잡아 강제로 성관계를 함

② 성추행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간음 외의 성적 가해 행위

ex | 지도자가 파이팅을 하자는 핑계로 신체 접촉(엉덩이 만지기, 껴안기 등)을 함

정신적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혹은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①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 평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말과 행동 등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저, SNS등)

ex | '자려 입으니 우리 ○○도 여자 맞네! 그 차림으로 대회 나가면 네 몸매로도 예선은 그냥 통과 하겠어!' 와 같은 발언

②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ex | 훈련 중 노골적으로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기

디지털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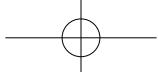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ex | 선배들이 성인비디오, 음란 사진을 공유하거나, 함께 보자고 권유함

2차 피해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소문 퍼트리기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ex | 사건의 원인이 모두 피해자가 부주의해서라고 운동부 내 소문을 퍼트림



03 성폭력의 사례

스포츠 성폭력 사례 1

사진 도용 후 무단 유포

지역 친선대회 후 주요 경기 장면과 동영상, 단체 사진을 포함하여 선수들끼리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선수 중 한 명이 다른 선수들의 동의 없이 A 선수의 사진과 영상을 모호하게 편집하여 “반도의 hot한 운동선수 몸매”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것이 알려졌다.

해당 SNS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몇 승인된 사람들이 이미지를 캡처하여 자신의 다른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A 선수의 사진은 노골적인 성희롱과 악플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A 선수의 항의와 신고로 원본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사진으로 A 선수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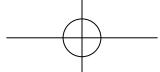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스포츠 성폭력 사례 2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같은 지역, 같은 종목 출신 운동부의 남자 선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은 합숙훈련 시즌이 끝나면 소속 여자 운동부원들의 사진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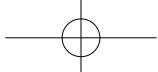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는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락커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다. 단톡방 멤버 중에는 본인의 개인 SNS나 오픈 채팅방에 이 사진들을 모아서 “#국대급_외모 #종목별_얼짱스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온라인 투표를 하기도 한다.

본인의 사진이 이런 단톡방에 올라가 온갖 성희롱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단톡방은 없애버리면 그만이라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구분	법률명	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❶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❶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❷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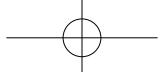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사. 성희롱 등 행위 ⁵⁾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 ⁵⁾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⁴⁾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 자세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대한체육회_관련규정”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성희롱의 모해와 진실

Q₁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A₁

피해자

성적모욕감과 수치심
→ 운동을 그만두는 계기

행위자

소속단체의 징계 민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 체육계 퇴출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문제

Q₂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A₂

상황에 따라 무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동은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Q₃ 성적인 농단, 신체 접촉은 운동부의 활력소가 된다?

A₃

피해자는 극도의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 분노 등 정신적인 피해로 훈련을 방해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며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운동부안의 신뢰는 깨지고 좋은 선수도 잃게 됩니다.

Q₄ 성희롱은 개인 사이의 일일 뿐이다?

A₄

오랫동안 스포츠계에 뿌리 박혀온 잘못된 인식이 만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경직된 운동부 문화, 위아래를 따지는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Q₅ 성희롱은 여성의 신체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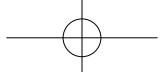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A₅

성희롱 피해자는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₆ 단지 친밀감의 표현인데 과민반응 아냐?

A₆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해 한다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방법



01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힘의 차이

- 물리적인 힘 혹은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 직접적인 성적 가혹 행위 뿐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성적인 결정권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성차별적 문화

-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고정된 성 관념 혹은 성 역할을 기반으로 특정한 언행이 강요되거나 금지됨
-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과 탄압이 존재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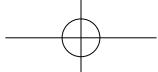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왜곡된 성 인식

- 상대방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대상화 하는 경우가 있음
-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혹은 상해를 가함

02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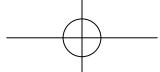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 ① 성폭력은 이성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 ②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락커룸에서 알몸 또는 속옷만 입고 얼차려를 주거나, 다른 선수 앞에서 의도적으로 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 등)
- ③ 경기 및 훈련 중 '질해보자(화이팅) 또는 칭찬'의 의미로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껴안기, 엉덩이 두드리기, 팔로 감싸기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훈련 중 다른 선수와 마사지 또는 자세 교정의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다.



- ⑤ 훈련 시 장난삼아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직접 만지거나 내 몸의 일부를 접촉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훈련 시 운동 장비로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직접 가리키거나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다른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 않는다.
(예: 가슴이나 엉덩이 크기, 몸매 평가 등)
- ⑧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다른 선수의 연애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이성교제 내용을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②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 ③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단체 채팅방에 특정 선수의 외모에 대해 평판하거나, 허락 받지 않은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절대 유포하지 않는다.
- ④ 이성 선수의 숙소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 간에도 다른 선수의 방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용무가 끝나면 신속하게 퇴실한다.
- ⑤ 샤워 및 탈의 중 다른 선수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씻겨주는(반대로 만지거나 씻길 것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⑥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 : 화식 시 술 따르게 하기 등)
- ⑦ 감독 및 코칭 스태프와 경기 및 훈련시간 외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진학 지도, 개별 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를 반드시 동행한다.
- ⑧ 선수와 감독 및 코칭 스태프는 상호간에 사적인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대처법



PART 03

01 성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01 사건 발생

- **안전 확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위험이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02 사건 신고

- **응급대응**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몸을 씻지 않고, 피해 옷차림 그대로 즉시 병원(산부인과, 비뇨기과-해바라기센터 연계) 방문 (48시간 이내) 필요

- **증거 확보하기**

성폭행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역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

▶ 피해당시 입었던 옷 종이봉투 보관(세탁X), 피해장소 및 상처 촬영, 피해 사건 기록 (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방법 등)

성희롱 :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 혹은 증거자료 확보

▶ 문자메세지, 녹음내용, 증거물, 목격자 등

추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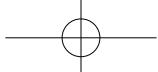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성폭행의 경우 왜 응급대응이 중요한가요?

성폭행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보존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03 상황 신고하기

- **상황 신고하기**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❶ 상황 신고하기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소속단체장 / 수사기관 (경찰)

☎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경찰청 112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해바라기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소속단체장 / 수사기관 (경찰)

☎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학교폭력 신고전화 ☎ 117 경찰청 ☎ 112

위 관련 기관 중 1곳 이상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수준을 전달해야 합니다.

❷ 도움 요청하기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신고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 보호(병원치료, 가해자와의 분리)와 피해상황 조사
진행이 시작됩니다.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 모두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므로 2차
피해 걱정을 덜어 두셔도 됩니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❸ 치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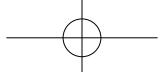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선수생활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
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입 (상담, 휴식 등)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❹ 조사의 진행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사건담당 수사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사건의 처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적 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주체

성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사법기관(경찰)

학생 : 스포츠공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법기관(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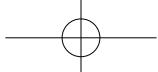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05 사후관리

- **사후관리** 온전한 스포츠인으로써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 불안, 우울, 공포 등).
몸의 회복만큼 마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의료 기관 및 상담센터(스포츠인권센터 내 상담 서비스 등)를 통해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2차 피해

2차 피해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가족, 친구, 동료, 지도자, 수사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언론 등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사고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것,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소속단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2차 피해의 양상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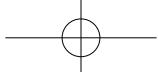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2차 피해 양상

-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혐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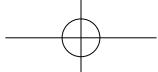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을 선별로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혐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 ①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 ②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 ③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④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 ⑤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학업(운동)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 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한 다음 이야기 해야 합니다.
- ⑦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자세히 물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⑧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여론을 활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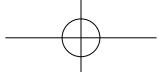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선수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부록





스포츠인권센터 소개



PART 01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관련정보 제공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합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빌딩 1902호 스포츠인권센터

연락처 : 02-4181-119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인권상담실 : 043-531-0288

지원 대상 : 선수, 학부모, 지도자, 관계자

주요사업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

-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 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 대한체육회 관계 규정 안내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이용안내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 각종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 지원

상담 및 사고 신고 접수



온라인 신고하기

<https://sports-in.sports.or.kr>

e-mail : sports19@sports.or.kr



전화 상담하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진천선수촌 선수인권상담실 043-531-0288

전화상담 운영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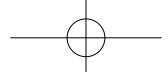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평일에만 운영되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홈페이지 신고상담을 이용해주세요.)



방문 상담하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13:00)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로 직접 찾아오시면 스포츠인권전문상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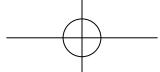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유관기관



PART 02

단체명	연락처	비고
학교폭력 전화문자 상담센터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17	#0117 문자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또는 110)	#1388 문자상담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1388)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청예단)
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02-2057-8701	https://www.wee.go.kr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희망재단	02-3291-3634	서울가정법원 연계사업(보호소년 수강명령 교육) 서울중앙지방법찰청 연계사업 (소년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교육 운영)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http://www.sisters.or.kr
여성긴급전화	1366	광역자치단체(시·도)센터 직접 연결은 '지역번호+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https://www.women1366.kr	24시간 1:1 채팅상담, 댓글/이메일/게시판 상담카카오톡 상담(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women1366)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서울 02-2263-6464, 6465 광주 062-363-0442, 0443 부산 051-817-6464, 4344 대구 053-471-6482, 6483 창원 055-283-8322 천안 041-561-0303 청주 043-252-0966, 0968 성남 031-751-1120, 6677 수원 031-224-688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평일 10:00~17: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삭제지원(피해 영상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수사 지원 연계(채증자료 작성,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www.kcva.or.kr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02-3453-5226	http://www.1318love.net



1899-3075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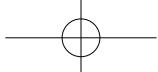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통합형** (위기상황 상담 및 일반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서비스, 심리평가 및 치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 365일, 24시간)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2층	서울대병원	02-3672-0365
서울북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내 융합의학연구동 6층	부산대병원	051-244-1375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2층	충남대병원	042-280-8436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아주대병원	031-215-1117
경기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명지병원	031-816-1375
강원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252-1375
강원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3
전남서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장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3층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제주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별관 3층	한라병원	064-748-5117

- **아동형** (일반상담, 의료, 법률, 심리평가 및 치료, 출장 수사지원 서비스 |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 지적장애인 | 월~금, 9시~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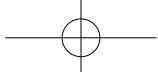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대구 중구 동덕로 125 금화빌딩 5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광주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충북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경남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경상대병원	055-754-1375

- **위기지원형** (위기상황 상담 및 일반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서비스, 심리평가 및 치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 365일, 24시간)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병원	02-870-1700
부산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032-582-1170
인천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기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2 한도병원 별관 3층	한도병원	031-364-8117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톨로병원 별관	성가톨로병원	061-727-0117
경북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7층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별관 2층	마산의료원	055-245-8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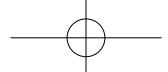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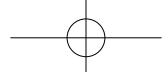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성폭력 유형별 관련 법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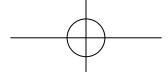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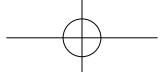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PART 03

유형	내용	법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7조의2 등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접촉, 강제 키스,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형법 298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추행을 한 행위	형법 299조 등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침입, 스토킹 등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인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 IOC위원

발행처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 스포츠인권센터

감 수 :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 스포츠인권보호·교육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 문화센터

전 화 : 02-420-4202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체육회에 있으며,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 대한체육회, 2019